

정기 이사회 회의록

- 개최일시 : 2019년 2월 22일(금) 10:00-11:40
- 개최장소 : 켄싱턴 호텔 여의도 상하오
- 총이사수 : 4명
- 출석이사 : 박성경 이사, 이태웅 이사, 원치윤 이사, 정재철 이사
- 출석감사 : 이천화 감사 이상 1명
- 회의내용

I.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참석하신 임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정재철 이사에게 성원보고를 하도록 하다.
- ▶ 정재철 이사 : 이사 총 6명 중 이사 4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정기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2019년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.

II. 전차 회의록 보고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정재철 이사에게 전차회의 보고를 하도록 하다.
- ▶ 정재철 이사 : 2018년 11월 23일(금) 11:00~12:40에 진행된 임시이사회는 이사 총 여섯 분 중 여섯 분과, 감사 한 분이 참석하였으며, 안건으로는
 1. 이랜드재단 2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의 건
 2. 이랜드재단 2019년 사업계획(안) 및 예산(안) 심의의 건
 3. 이랜드클리닉 장비구입 및 리모델링(안) 심의의 건총 3건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고 재단 운영 및 사업에 반영되었음을 보고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전차회의록 보고 건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.
- ▶ 원치윤 이사 : 전차회의 보고사항에 대해 동의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이에 재청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사들외 동의와 재청하셨기에 「전차회의록」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.
- ▶ 참석이사 전원 : 이에 동의하다
- ▶ 박성경 이사장: 전차회의록이 관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III. 감사보고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천화 감사에게 이랜드재단 결산에 따른 감사보고를 하도록 하다.
- ▶ 이천화 감사 :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에 의거 사무국에서 제출한 2018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수지계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비영리 기관의 회계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요한 문제없이 작성되었고 기타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직접사업비용의 비용이 정당성 부분에 대하여 묻다
- ▶ 정재철 이사 : 법인 조직정비로 사업이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특화되었다고 말하며, 법적 기준 준수와 운영비용을 현실화했다고 답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랜드재단 감사보고에 대한 이사들의 추가 의견을 묻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감사보고 보고사항에 대해 동의하다.
- ▶ 원치윤 이사 : 이에 재청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: 2018년 이랜드재단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.

IV. 2018년 이랜드재단 성과보고 및 2019년 사업계획 보고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랜드재단과 클리닉 각 2019년 성과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다.
- ▶ 김옥 국장 : 2018년 이랜드재단의 주요성과와 2019년 경영계획에 대해 보고하다.
보고내용 ① 2018년 이랜드재단 주요성과 보고
② 2018년 사업 결과보고
③ 2019년 이랜드재단 경영계획
④ 2019년 세부 사업내용
- ▶ 강준호 원장 : 2018년 이랜드클리닉의 주요성과와 2019년 경영계획에 대해 보고하다.
보고내용 ① 2018년 이랜드클리닉 주요성과 보고
② 2018년 클리닉 사회공헌활동보고
③ 2019년 사업 계획보고
- ▶ 정재철 이사 : 이랜드클리닉 추가 장비구입 계획을 묻다.
- ▶ 강준호 원장 : 금년도 하반기에 노후 장비 교체 예정이라고 답하며 향후 사옥 이전 계획에 따라 인테리어와 장비구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현재 클리닉 의료장비와 겸진가능한 항목에 대해 묻다.

- ▶ 강준호 원장 : 의료장비별 검진 가능한 항목에 대해 답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보고된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경영계획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경영계획 보고사항에 대해 동의하다.
- ▶ 원치윤 이사 : 이에 재청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「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경영계획」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.
- ▶ 참석이사 전원 : 이에 동의하다
- ▶ 박성경 이사장: 2018년 성과보고와 2019년 경영계획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V. 회의 안건 심의·의결

<제 1호 의안> 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(안) 심의의 건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정재철 이사에게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(안)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다.
- ▶ 정재철 이사 : 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결산서 상 이월금 비중이 높은 사유를 묻다.
- ▶ 정재철 이사 : 이월금 비중이 높은 사유를 답하다.
- ▶ 김옥 국장 : 전년도 사업결과와 함께 사업부 지출이 적은 사유를 답하며 향후 2019년에는 공적네트워크를 통한 사업확대로 사각지대 발굴,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법인 자체 사업 외에 민간, 공공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다.
- ▶ 정재철 이사 :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사각지대 대상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문의할 수 있는 소통채널 마련하겠다고 답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(안)에 대한 이사들의 추가 의견을 묻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(안)에 대해 동의하다.
- ▶ 원치윤 이사 : 이에 재청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「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(안)」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.
- ▶ 참석이사 전원 : 이에 동의하다

- ▶ 박성경 이사장: 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(안)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다.

<제 2호 의안> 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에 대해 정재철 이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.
- ▶ 정재철 이사 :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9년 기부금에 대한 기본재산예외 승인의 필요성을 설명하다.

[관련근거]
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‘공익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’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.
- ▶ 이천화 감사 :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절차라 말하다.
- ▶ 원치윤 이사 : 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에 대해 동의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이에 재청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「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」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.
- ▶ 참석이사 전원 : 이에 동의하다

- ▶ 박성경 이사장: 이랜드재단 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다.

<제 3호 의안> 이랜드재단 정관 변경(안) 심의의 건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랜드재단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재철 이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.
- ▶ 정재철 이사 : 이랜드정관 중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6조, 제19조의 조항내용 변경(안)을 설명하다.

[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]

변경 전	변경 후
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이사장 1인 2. 이사 6인(이사장 포함) 3. 감사 2인	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 <u>1.이사6인(이사장, 대표이사 각 포함)</u> 2.감사2인
제12조(상임이사) ①이사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 중에서 1명의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. ② 상임이사는 이 법인에 상임하며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③ 기타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12조(상임이사) (삭제)
제13조(임원의 선임)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②~③ 생략	제12조(임원의 선임)(조문번호변경) ① <u>대표이사, 이사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</u> ②~③(현행과 같음)
제16조(이사장의 직무)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,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이사회 의장이 된다.	제15조(이사장의 직무) <u>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,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.</u>
제19조(신설)	제19조(대표권의 제한)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랜드재단 정관 변경(안)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타 재단과 NGO의 사례를 묻다.
- ▶ 정재철 상임이사 : 타 재단과 NGO의 사례를 답하다.
- ▶ 이천화 감사 :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의 구분이 필요하며 현 변경(안)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밀하다.
- ▶ 원치윤 이사 : 이랜드재단 정관 변경(안)에 대해 동의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이에 재청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「이랜드재단 정관 변경(안)」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.
- ▶ 참석이사 전원 : 이에 동의하다
- ▶ 박성경 이사장: 이랜드재단 정관 변경(안) 심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다.

<제 4호 의안> 대표이사 선임 및 국장 선임의 건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원활한 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재철 이사가 대표이사로 적임자임을 설명하며 정재철 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.

- 아 래 -

성명	대표이사 선임일	이사 선임기간	비고
정재철	2019.02.22	2018.02.23.~2021.2.22	

- ▶ 원치윤 이사 : 정재철 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동의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이에 재청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「대표이사 선임」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.
- ▶ 참석이사 전원 : 이에 동의하다
- ▶ 박성경 이사장: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정재철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랜드재단 국장 선임에 대해 정재철 이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.
- ▶ 정재철 이사 : 그룹과 재단 근무를 비롯하여 사회공헌 분야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김욱 관장이 이랜드 재단 국장으로 적임자임을 설명하다.

- 아 래 -

직 위	성 명	생년월일	발령일자
이랜드재단 국장	김 육		2019.3.1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김욱 관장의 이랜드재단 국장 선임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.
- ▶ 원치윤 이사 김욱 관장의 이랜드재단 국장 선임에 대해 동의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이에 재청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「이랜드재단 국장」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.
- ▶ 참석이사 전원 : 이에 동의하다
- ▶ 박성경 이사장: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김욱 관장의 이랜드재단 국장 선임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 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다. 선임 된 정재철 대표이사와 김욱 국장의 각오와 소감을 묻다.
- ▶ 정재철 이사 : 대표이사로 이랜드재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,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, 직원에게 감사가 되며, 고객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답하다.

- ▶ 김 육 국장 : 국장으로 이랜드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청지기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였다.

<제 5호 의안> 상근임직원정수 승인의 건

- ▶ 박성경 이사장: 제5호 의안 '상근임직원 정수 승인'의 건에 대해 정재철 이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.
- ▶ 정재철 이사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호에 의거하여 재단 상근직원 정수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근직원 정수를 보고하다.

[관련근거]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호

제5조(임원 등)제9항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.

시행령 제14조(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)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.
- ▶ 원치윤 이사 : 원안에 대해 동의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이에 재청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「상근임직원 정수 승인」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.
- ▶ 참석이사 전원 : 이에 동의하다
- ▶ 박성경 이사장: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다.

<제 6호 의안> 2019년 이랜드재단 1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실의의 건

- ▶ 박성경 이사장: 제6호 의안 '2019년 이랜드재단 1차 추가경정예산(안)'의 필요와 내용에 대해 정재철 이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.

- ▶ 정재철 이사 : 재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다.

(단위 : 천원)

법인명	기정	추경	증감
이랜드재단	8,200,000	10,621,203	2,421,203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재단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.

- ▶ 원치윤 이사 : 재단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해 동의하다.

- ▶ 이태웅 이사 : 이에 재청하다.
 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「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(안)」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.
 - ▶ 참석이사 전원 : 이에 동의하다
- ▶ 박성경 이사장: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이랜드재단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다.

VII. 폐회선언
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상으로 본 이사회의 모든 안건이 적법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, 결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며 폐회 동의를 묻다.
- ▶ 원치운 이사 : 폐회 동의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 : 재청하다.
- ▶ 박성경 이사장 :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.

이상의 의사진행과 결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, 날인하다.

폐회시각 11시 40분



2019년 2월 22일

이사장 박 성 경



이 사 이 태 웅



이 사 원 치 윤



이 사 정 재 철



감 사 이 천 화

